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9. 3(목)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9. 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9. 14(월) 제21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정성문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,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규정,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 등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고,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

○ 사용료·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증가율 변경 및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였고,「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및 맞춤법을 교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공유재산을 불법 무단 점·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.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”을 “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.

2.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,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,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이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
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
4.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5.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⑨ 심의회 심의·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⑩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”를 “(심의회의 업무)”로 하고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유재산심의회의”를 “심의회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 제11조 및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
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
10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유재산심의회의”를 “심의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토지”를 “토지의 취득·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유재산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”를 “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)

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제28조제4항제5호 중 “제29조제1항제14호”를 “제29조제1항제1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

지가격을 말한다)의 100분의 1로 한다. 다만,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.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5”로 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토지”를 “인건비, 토지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(제28조제6항 단서 관련)

대부료의 예상증가율	적용 대부료율
20% 이상 50% 미만	1.0% -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- 20%) × 50/10,000
50% 이상 100% 미만	0.85% -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- 50%) × 30/10,000
100% 이상 200% 미만	0.70% -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- 100%) × 15/10,000
200% 이상 500% 미만	0.55% -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- 200%) × 5/10,000
500% 이상	0.40%